

2023년 광주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(지자체 협력사업) 공고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광주특구 내 기업의 인공지능 산업 전환을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첨단기술기업 발굴·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“2023년 광주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(지자체 협력사업)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6월 13일
광주광역시장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

I 세부사업 구성 및 신청접수 안내

■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 구성

① 인공지능(AI)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 3

■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

-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

-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www.innopolis.or.kr),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(pms.innopolis.or.kr)

- 공고 및 접수기간

사 업 명	공고기간	접수기간
① 인공지능(AI)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	'23. 6. 13(화) ~ 7. 12.(수)	'23. 6. 29.(목) ~ 7. 12.(수), 15:00까지

■ 접수기간 및 방법

○ (접수방법)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(pms.innopolis.or.kr)

○ (접수기간)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참조

* 접수기간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.

■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

○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사 업 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① 인공지능(AI)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	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	이현호 연구원	062-603-5023	coffumer@innopolis.or.kr

■ 기타사항

-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, 지원내용·조건, 접수방법 등은 “II. 세부사업별 시행계획”에 따르며,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” 및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*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,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·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

II 세부사업별 시행계획

1 인공지능(AI)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광주특구 내 기업의 AI (시)제품·서비스 제작 등 AI 역량 향상 및 사업화 기반 지원을 통하여 AI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

□ 사업내용

- 광주특구 내 기업 중 AI 기업(전환예정 포함)을 대상으로 ①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, ②시험분석 및 제품인증, ③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
* 광주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연계 전후방 지원

2. 지원내용

□ 지원규모

- 지원 과제별 최대 60백만원 이내 (총 사업비 400백만원)
* 지원분야 중복지원 시 과제당 60백만원 이내 선정가능하며, 지원 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

□ 지원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

- * 수시 접수 사업으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□ 지원대상

- 광주특구(광주광역시 소재) 내 기업 중 AI 기술*을 활용하여 제품·서비스 등을 사업화하는 기업**, 기존 제품·서비스 등에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****
* 머신러닝, 언어처리, 시각처리, 상황인식 기반 인공지능 기술 등
** 주관기관은 본 과제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시제품 또는 POC(Proof Of Concept), 전통적인 아이템 AI전환 등을 진행하여야 함
*** 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사업화역량강화(R&BD), 연구소기업 씨앗자금, 과제 수행중인 기업은 제외

□ 지원내용

- AI산업 진출·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수요(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, 시험분석 및 제품인증, 마케팅 및 판로개척) 맞춤형 집중 제공

< 광주특구 인공지능(AI)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 지원 분야 >

지원 분야	지원 내용	지원규모
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	■ 시제품 제작	40백만원 이내
	■ 고객 의견 반영 시제품 개선	
	■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	
시험분석 및 제품인증	■ 시험 분석	40백만원 이내
	■ 제품 인증(국내 인증에 한함)	
	■ 시험 분석 및 인증 컨설팅	
마케팅 및 판로개척	■ 국내외/산업별 시장 조사 및 BM 수립	20백만원 이내
	■ 제품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	
	■ 기업·제품 홍보, 전시회 등 참가지원	

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

- 「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」에 따라,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,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,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
-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

중소기업 ¹⁾ 인 경우	중견기업 ²⁾ 인 경우	공기업 ³⁾ 및 기타기업 ⁴⁾ 경우	그 외의 경우
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% 이내	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% 이내	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% 이내	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% 이내

○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

중소기업 ¹⁾ 인 경우	중견기업 ²⁾ 인 경우	공기업 ³⁾ 및 기타기업 ⁴⁾ 경우	그 외의 경우
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	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	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% 이상	필요시 부담

- 1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2)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- 3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
- 4) 상기 1)에서 3)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< 참고 :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>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'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

중소기업	중견기업	공기업 및 기타기업	그 외의 경우
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%이내	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%이내	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%이내	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%이내

-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,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

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	그 외의 경우
연도별 해당 기관 부담연구개발비의 10%이상	연도별 해당 기관 부담연구개발비의 13%이상	연도별 해당 기관 부담연구개발비의 15%이상	필요시 부담

-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
- ※ 다만, 2023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

-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
 - 비영리기관
 -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
 -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

□ 중소·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

-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 -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2022. 12. 14.)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
 -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,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
 - 중소·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,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
- 「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」에 따라,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, 한시적으로 중소·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'사용기준'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·사용 가능

□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: 해당없음

□ 지원제외 대상(공고일 기준)
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- 접수마감일 기준 특구육성사업(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,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사

업)을 수행 중인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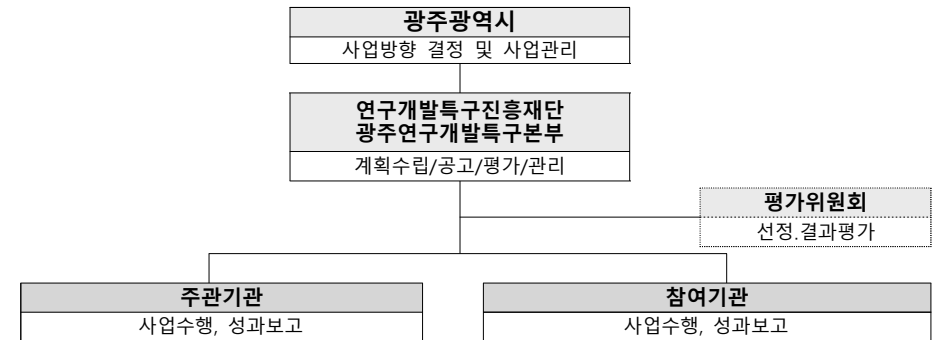
- 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규 제5호, '21.10.14.)」 '14.사전검토' 규정에서 "사전지원제외"에 해당될 경우

※ 주요 사전지원제외 대상 (세부 내용은 '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' 참조)

-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(채무불이행, 완전자본잠식 등)
-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국세/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휴·폐업 등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

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□ 추진체계



□ 추진절차

절 차	일 정	주요 내용
사업공고	'23.6월	- 수행기관 모집 공고
신청서 접수	'23.7월	-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
선정(발표) 평가	'23.7월	-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, 지원대상 확정
협약체결	'23.7월	-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
사업수행	'23.7월~	- 사업수행
결과보고 및 정산	종료 후	- 사업결과 보고/최종평가/사업비 정산

*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, 신청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평가항목·방법 및 유의사항

□ 평가항목

평가항목	세 부 항 목	배점
지원 필요성	- 지원의 필요성 - 신청지원 분야(AI 제품·서비스) 적합성	20
AI 전문 역량	-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- AI 전문인력 구성의 적합성	20
사업계획의 타당성	-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- 목표 수준 및 평가지표의 구체성 - 추진전략 및 일정의 적정성 -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	40
지원효과성	- 지원을 통한 고용, 매출 등 성과 증대 효과성 - 향후 성과를 활용 계획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	20

* 평가항목 및 비중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방법

-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토론평가,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‘지원가능과제’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‘지원제외’로 분류함
- ‘지원 가능 과제’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‘지원가능과제’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※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
□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: ‘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’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- * 단,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원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
- **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-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‘제외과제’

□ 유의사항

공통사항
가.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- 「대외무역법」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.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.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(단,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(증권시장의 상장), 인수합병, 자금조달(투자유치)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) 라.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(사무실, 휴대전화, 이메일 등)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□ 관련법령 및 규정

근거법령	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 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관련규정	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

5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사업공고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
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s://www.ntis.go.kr>)
- 연구개발특구포털(www.innopolis.or.kr)
-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pms.innopolis.or.kr>)

□ 신청방법 :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pms.innopolis.or.kr>) 통해 신청

☐ 접수기간 : 수시접수(신청 전 담당자 문의 요망, 예산 소진 시 마감)

* 1차 접수 마감 기한 : 2023. 7. 12.(수), 15:00까지

☐ 문의처

○ 담당부서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

담당자	연락처	전자메일
이현호 연구원	062-603-5023	coffumer@innopolis.or.kr

☐ 제출서류

○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 형태로 PMS에 업로드

*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

번호	서 류 명	서식	비고
1	사업계획서	서식 1호	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필수
2	사업자등록증	-	모든 기관 제출 필수
3	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	-	최근 3개년도('20~'22) 모든 기관 제출(비영리기관 제외) 필수
4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최근년도기준, 모든 기관 제출 (비영리기관 제외) 필수
5	중소/중견기업확인서 ¹⁾ ※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 기간이 유효해야 함	-	주관/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(비영리기관 제외) 필수
6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서식 2호	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
7	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※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	서식 3호	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
8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4호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
9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	서식 5호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
10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서식 6호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
11	참여연구원 정보	서식 10호	엑셀 양식에, 과제참여인력 (주관/공동) 정보 기입 후 제출 필수

*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: 중소기업확인서(<http://sminfo.smba.go.kr>), 중견기업확인서(<https://www.hpe.or.kr>)

- 주의사항 :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

신청 시 주의사항

-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
-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,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
- 전산 등록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pms.innopolis.or.kr>)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
-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
 - ※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
-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

6. 기타사항

- ☐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☐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☐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·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- 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
- ☐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육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,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